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428호
번 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6. 4.

제 안 자: 도시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수도요금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적시할 필요성이 없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경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우리 시 다른 조례와 통일하고 감면 효율을 하향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수도요금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에 관한 단서를 삭제함(안 제11조 제2항).
- 수도요금 감경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자녀의 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 효율을 하향함(안 별표 3의2).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8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별지”

[별표 3의2] <개정 2024.00.00.>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8조 관련)

1.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1) 가정용: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 2) 산업용: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 3) 일반용: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 4) 공업용: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 5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경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

다. 수도요금 부과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감경 대상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수용가
- 2)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5성급 호텔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은 수도요금 감경사유 발생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중 10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수도요금 전자고지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고지 참여 수용가에는 보통 우편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감경할 수 있다.

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전은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자.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용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일반용 1단계 적용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만 적용한다.

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각 목에 따라 감면되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요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4. 제1호나목부터 다목까지는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감경하고 감경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 중 감경액이 높은 금액을 감경한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3항제4호 전단 중 “주거전용면”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다목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3의2] <개정 2024.00.00.>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8조 관련)

1.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1) 가정용: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 2) 산업용: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 3) 일반용: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 4) 공업용: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부과되는 사용량에서 가정용 월 5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경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

다. 수도요금 부과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감경 대상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수용가
- 2)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5성급 호텔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은 수도요금 감경사유 발생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중 10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수도요금 전자고지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고지 참여 수용가에는 보통 우편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감경할 수 있다.

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전은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자.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수용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일반용 1단계 적용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은 전용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만 적용한다.

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각 목에 따라 감면되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요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4. 제1호나목부터 다목까지는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감경하고 감경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 중 감경액이 높은 금액을 감경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 관리)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의 내용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4. <u>주거전용면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혼재한 경우만 해당한다.</u></p> <p>제40조의2(지원금의 결정 등)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u>공동주택의 옥내배관 개량지원</u></p>	<p>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거전용면적</u>----- ----- ----- ----- -----.</p> <p>제40조의2(지원금의 결정 등) --- ----- ----- <u>공동주택 공용부분의</u> -----</p>

을 결정할 때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7조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을 결정한다.

-----.